

2026년 「세종 뿌리깊은 가게 선정」 계획 공고

세종시만의 특색이 담긴 오래되고 서비스가 우수한 가게를 발굴하여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자 2026년 「세종 뿌리깊은 가게」 선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 4. 10.

세종신용보증재단 이사장

1. 모집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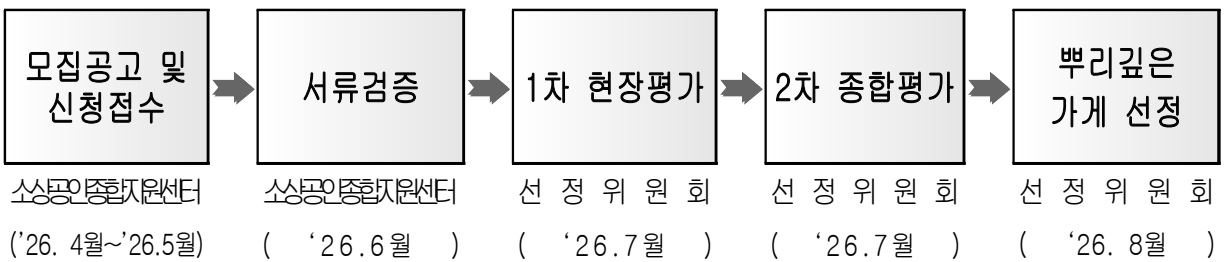
- (신청기간) 2026. 4. 10. (금) ~ 5. 29.(금)
 - (신청대상) 음식점 및 도소매·개인서비스·제조업 일부 중 읍·면 지역 20년 이상, 동 지역 10년 이상 동일업종 영위중인 소상공인
 - ※ (업력산출) 사업자등록증 개업일로부터 선정 공고일 기준 전일까지
- 예) 지역 주민들에게 입소문 난 숨은 맛집, 전통을 유지해 온 동네 가게, 기타 특색있는 메뉴, 분위기, 스토리 등을 보유한 가게 등
- (신청방법) 세종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방문, 등기우편, 이메일 제출
 - (방문, 등기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로 33-10, 5층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30129)
 - (이메일) sjcenter@sjsinbo.or.kr (제목예시 : 세종뿌리깊은가게 신청_홍길동)
 - ※ 방문 시 주말, 공휴일 접수 불가 / 등기우편은 접수 마감일 소인에 한함
 - (제출서류) 신청서, 관련 증빙서류 일체(소상공인확인서, 신분증 사본必)

구분	제출서류	부수	비고
1	신청서	1부	<붙임1> 작성
2	신청업체 기술서	1부	<붙임1-1> 작성
3	개인정보 수집 / 이용·제공 동의서	1부	<붙임1-2> 작성
4	증빙자료	해당부수	<붙임1-3> 작성
5	소상공인 확인서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	<붙임1-4> 작성
6	사업자등록증, 사실증명	해당부수	<붙임1-5> 작성
7	가점 관련 증빙서류	해당부수	<붙임1-6> 작성

2. 제외대상

- 신청자격 미달업소 (※모집 대상의 업종 외, 업력 기준 미 경과 등)
- 영업정지 처분 중(공고일 기준),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최근 3년 이내)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있는 업소(공고일 기준)
- 노무관련(임금체불 등) 민원 이력이 있는 업소
- 소상공인 정책자금 용자제외 업종(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붙임2 참조)

3. 선정절차



※ 「세종 뿌리깊은 가게 선정위원회」 구성(시민, 전문가 등) 심사 및 결정

4. 심사항목

- (1차 현장평가) 반영비율 60%

항 목	배점	음식점	도·소매, 제조, 기타서비스
역사성	20	업력, 지역특산품 활용, 소재지 및 메뉴 유지	업력, 지역특산품·산업 활용, 소재지 및 메뉴 유지
희소성	20	전통성(맛), 독창성, 보존 가치성	전통성(기술 등), 독창성, 보존 가치성
경쟁력	40	음식만족도, 가격 적정성 고객 응대, 가게 청결	기술 등 서비스 만족도, 가격 적정성 고객 응대, 가게 청결
지속 가능성	20	경영철학, 지속가능성	경영철학, 지속가능성
가산점	2	지역사회 공헌, 특허 등 보유	지역사회 공헌, 특허 등 보유

- (2차 종합평가) 반영비율 40%

- 신청서 적정성, 업체의 차별성, 지속가능성(가업승계 등), 필요성 등

5. 선정결과 발표 : 최종 선정 후 개별통지

6. 지원내용

- ① 신뢰도·인지도 향상을 위한 뿌리깊은 가게 인증 현판 제공
- ② 市(소식지, 소셜미디어) 활용 및 언론·방송사를 통한 홍보 지원
- ③ 소상공인지원센터 경영 컨설팅 연계 운영 성공사례 창출
- ④ 세종 뿌리깊은 가게 맞춤형 우대보증 지원 (※ 세종신용보증재단)

7. 유의사항

- 신청서 등 허위로 작성하여 선정된 경우, 선정취소 될 수 있음
- 신청 제한 대상 여부 검토를 위해 반드시 대표자 본인이 신청
- 가게를 상속을 받아 운영 중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증여세신고서, 가업승계 계약서 등) 가업승계와 관련된 서류 제출 시 인정
-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서류 미제출시 신청 포기로 간주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업체 미확인(연락불능) 및 착오로 인한 평가 불참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1·2차 평가점수 합계가 60점 미만인 경우 최종 선정 대상에서 제외

8. 기타 문의

-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 044-865-3137, 3138)

붙임 1. 신청서

- 1-1. 신청업체 기술서
- 1-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1-3. 증빙자료
- 1-4. 소상공인 확인서, 신분증 사본
- 1-5. 사업자등록증 등
- 1-6. 가산점 관련 증빙서류
- 2. 정책자금 제외 대상 업종

“세종 뿌리깊은 가게” 선정 신청서

접수번호

* 모든사항 필수 기재

신청인 정보	업 체 명		최초창업일	0000년 0월 0일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	업 종	*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 기재
	업 체 주 소	ex) 세종특별자치시 로 000 1층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만 세)
	연락처	(H.P) (TEL)	e-mail	@
	매출실적	(2023년) _____백만원 → (2024년) _____백만원 → (2025년) _____백만원		
	고용증감	(2023년) _____명 → (2024년) _____명 → (2025년) _____명		
	행정처분 이력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관련법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 과태료 등) 이력 여부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 '있음' 선택 시 처분 내용, 처분 일자 기재:		

신청년도 업체현황	업력	상시근로자수	주요사업	업종
	00년	0 명		

※ 세종 뿌리깊은 가게 발굴 및 육성사업 참여 의무사항 및 이행 확약

- 신청서 등을 허위로 작성(제출)할 경우 선정 취소 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 : 예 아니오
- 현장평가(조직관리, 재무성과 등 추가 증빙자료 제출)에 성실히 응답할 것 : 예 아니오

상기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2026년 세종 뿌리깊은 가게 선정사업』 참여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는 바, 이에 신청합니다.

2026 년 월 일

대 표 자 : _____ (서명)

세종특별자치시장 · 세종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귀하

※ 본 신청서는 <2026년 「세종 뿌리깊은 가게」 사업>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선정위원회 심의 자료로 활용되며, 신청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대상 선정 이후에도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 첨부하여 제출할 서류
- 1-1) 신청업체 기술서/ 추천서 1부.
 - 1-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1-3) 증빙서류(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1부.
 - 1-4) 소상공인 확인서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
 - 1-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1-6) 가산점 관련 증빙서류 1부.

신청업체 기술서

가게에
대한
기술
사항

○ 사업 경력

- 전체 사업경력 ____년 가운데 현 소재지에서 ____년 운영

○ 사업장 운영과 관련하여 경쟁력이라고 생각하는 요소

(※ 역사성, 전문성, 창조성, 예술성, 상징성 등 해당 가게만의 추억을 중심으로)

-
-

※ 점포 및 대표자에 대한 소개 및 다른 업체와 차별화된
경영방식 및 향후계획 등을 서술

<붙임 1-3> 증빙자료

※ 소상공인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

① 매출액 확인서류(최근 3년)

표준재무제표증명 <u>보유</u>	표준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 매출액 기준 ※ 단, 표준재무제표증명의 손익계산서 매출액 중 기타 매출(국고 보조금, 개발보조금 등)은 제외하고 산정
표준재무제표증명 <u>미보유</u>	※ 아래 서류 중 1부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함 ①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복합 업종의 경우 주된 사업(업태) 판단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추가로 제출(3년)해야 하며, 해당서류는 매출증빙이 될 수 없음 ② 사업장현황 신고서(홈텍스 또는 세무대리인이 확인)

②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직전사업연도 3년)

* 상시근로자는 임원 및 일용근로자(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1개월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단기근로자) 등을 제외

상시근로자가 <u>있는</u> 경우	※ 아래 서류 중 1부 제출 ①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② 연말(반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③ 월별 보험료 부과내역 조회(고용, 산재)
상시근로자 <u>없는</u> 경우	① 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③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확인시스템 발급)

※ 신청일 기준 1개월 발급한 서류 인정 ※

<붙임 1-4> 소상공인 확인서 및 신분증 사본

소상공인 확인서 및
신분증 사본 첨부

<붙임 1-5> 사업자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폐업사실증명원 등)
사실증명(사업자등록변경내역)
사본 첨부

<붙임 1-6> 가산점 관련 증빙서류

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봉사활동 증빙서류
- 나눔·봉사활동 확인서

② 업종관련 자격증 및 특허 보유 입증서류

③ 인증 실적

- 부처 및 구에서 공식 운영 중인 지정제도 지정시 증빙서류

예시) 백년가게,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제, 기타 지자체별 운영 지정제도

<붙임 2> 정책자금 제외 대상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등)
56211	일반유희주점업
56212	무도유희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신청일 기준 동일 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 은 신청 가능(현재 소재지에서는 6개월 미만이지만 과거 세종시 내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영업을 한 경우 사업자등록 변경내역으로 확인 가능)

표준산업분류	업종
	- 부동산관리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1531 중	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예: 기획부동산 등)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보건업
86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 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통계청 기준)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소상공인자금 지원 가능 / 불가능 업종 관련 해석(예외 및 예시)

-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 지원불가
- 기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